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기철 외 5명 소유물건
(2025타경10224)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법보좌관 정호경(경매2계)

감정평가서번호: 25-0403-01-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뜨는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이 재 흥

감정평가액	일억일백칠십만원정(₩101,700,00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법보좌관 정호경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기철 외 5명 (2025타경1022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4.04	2025.04.04	2025.04.0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900	토지	900	113,000	101,7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01,7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소재 "양양,C"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경매 목적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3.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4. 실지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결정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4월 04일에 실시하였으며,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나.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04일로 함.

5.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에 자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연생 임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성격, 감정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의 비교방식에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이 본건 토지의 시장가치 산정에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판단됨.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상기 판단 근거에 따라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3.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가. 공시지가기준법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2024)(원/㎡)	비고
1	북평리 407-28	900	계획관리	임	전 및 토지임야	맹 지	정방형 평 지	33,300	-

2) 비교표준지 선정

본건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호(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북평리 407-16	666.0	계획관리	임	토지임야	세로(가)	사다리 평 지	37,300	-

3) 위치도

후첨 “광역위치도” 및 “상세위치도”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시점수정 기간 및 산식	지가변동률(%)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5.01.01~25.04.04) (계획관리) 2025.01.01 ~ 2025.02.28 : 0.496 2025.02.01 ~ 2025.02.28 : 0.295 $(1 + 0.00496) * (1 + 0.00295 * 35/28) \approx 1.00867$	(0.867%) 1.00867	-

※ 2025년 03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되어 2025년 02월분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6) 개별요인 비교

6.1)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관개, 재해 및 자연환경 등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 규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2) 개별요인 비교

기호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	0.90	1.05	1.00	1.00	0.945
본건은 비교표준지(가) 대비 자연조건(이용상황 등)에서 다소 우세하나, 접근조건(임도의 상태 등)을 고려시 개별요인은 열세함.					

7) 그 밖의 요인 보정

7.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시세, 가격동향 및 감정평가사례 등과의 균형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의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감정평가사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7.2) 산정방법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과 사례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p>※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p> <p>※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p>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3) 가격조사 자료

7.3.1)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①	북평리 4**-*	계획관리	임	104,000	2021.02.05.	경 매
②	북평리 4**-*	계획관리	임	114,000	2021.07.19.	담 보
③	북평리 4**-*외	계획관리	임	104,389	2022.08.05.	거래사례 (평균단가)
④	북평리 4**-*외	계획관리	임	125,196	2021.03.09.	거래사례 (평균단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7.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7.4.1) 적용 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 ①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7.4.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사례	104,000	1.000	1.15583	1.000	1.000	120,206	3.195
(가)표준지	37,300	-	1.00867	-	-	37,623	
※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1.02.05.~2025.04.04) : 1.15583							
※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개별요인	접근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자연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행정적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기타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계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4.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결정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상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3.19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7,300	1.00867	1.000	0.945	3.19	113,418	113,000

나.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 및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들 중에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③을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③	북평리 4**~**외	계획관리	임	104,389	2022.08.05.	거래사례 (평균단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2) 사정보정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며 별도의 사정보정은 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적용사례	시점수정기간 및 산식	시점수정치	비고
③	<p>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2.08.05~25.04.04) (계획관리)</p> <p>2022.08.01 ~ 2022.08.31 : 0.389</p> <p>2022.09.01 ~ 2022.09.30 : 0.291</p> <p>2022.10.01 ~ 2022.10.31 : 0.244</p> <p>2022.11.01 ~ 2022.11.30 : 0.180</p> <p>2022.12.01 ~ 2022.12.31 : 0.072</p> <p>2023.01.01 ~ 2023.12.31 : 0.692</p> <p>2024.01.01 ~ 2024.12.31 : 3.426</p> <p>2025.01.01 ~ 2025.02.28 : 0.496</p> <p>2025.02.01 ~ 2025.02.28 : 0.295</p> <p>$(1 + 0.00389 * 27/31) * (1 + 0.00291) * (1 + 0.00244) * (1 + 0.00180) * (1 + 0.00072) * (1 + 0.00692) * (1 + 0.03426) * (1 + 0.00496) * (1 + 0.00295 * 35/28) \approx 1.06232$</p>	(6.232) 1.06232	

※ 2025년 03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되어 2025년 02월분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5.1)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관개, 재해 및 자연환경 등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토양, 토질의 양부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조건	기타	기타 규제 등
		장래의 동향, 기타

5.2) 개별요인 비교

기호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	0.90	1.15	1.00	1.00	1.035
본건은 거래사례③ 대비 접근조건(임도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이용상황 등)을 고려시 개별요인은 우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04,389	1.000	1.06232	1.000	1.035	114,776	11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토지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단가와 비교할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대상 토지의 단가를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1	113,000	115,000	113,000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면적 (㎡)	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900.0	113,000	101,700,000	-
합계				101,7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임야	계획관리지역	900	900	113,000	101,700,000	
합 계								₩101,700,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소재 "양양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펜션,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입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젓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 대부분이 전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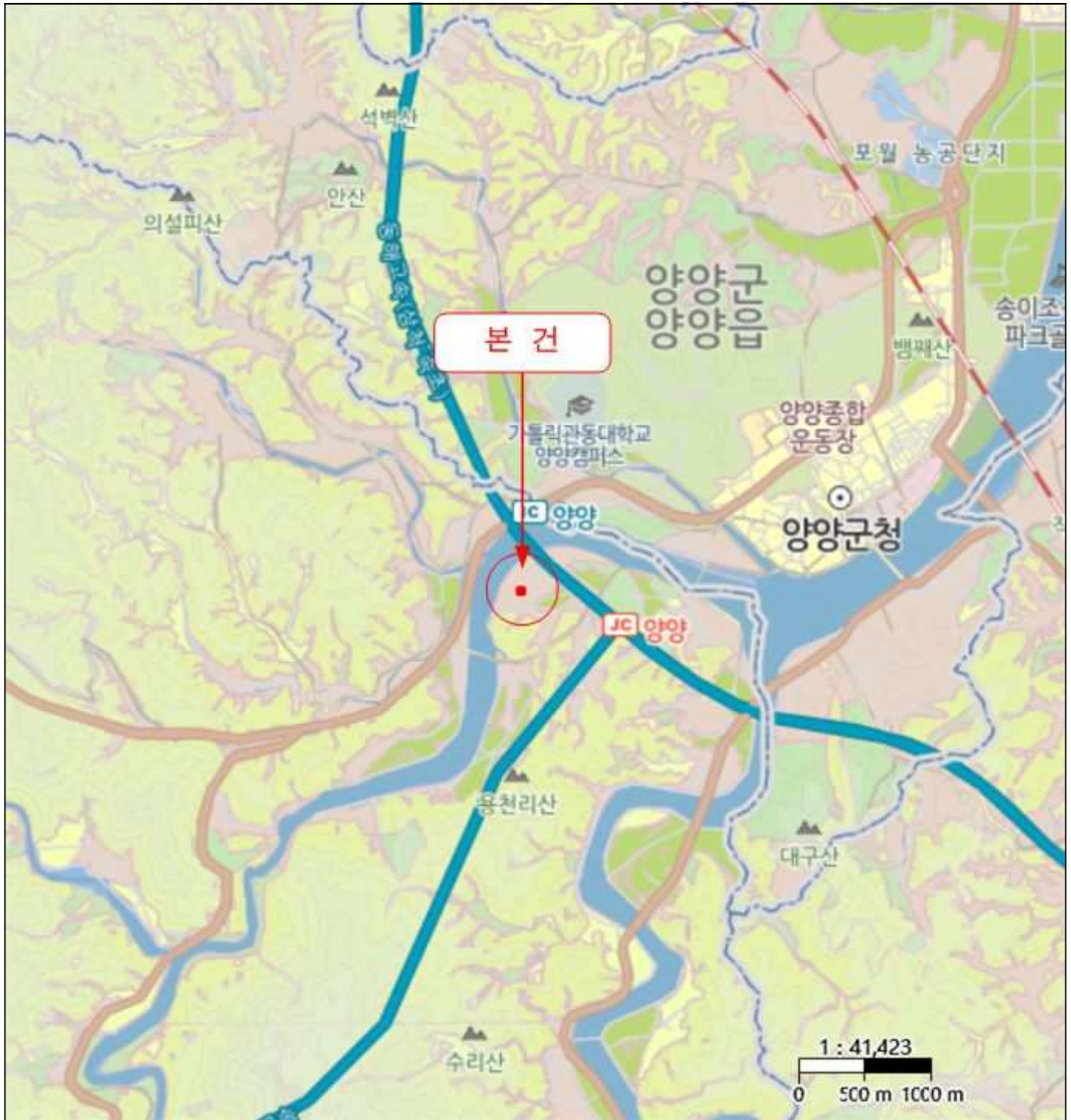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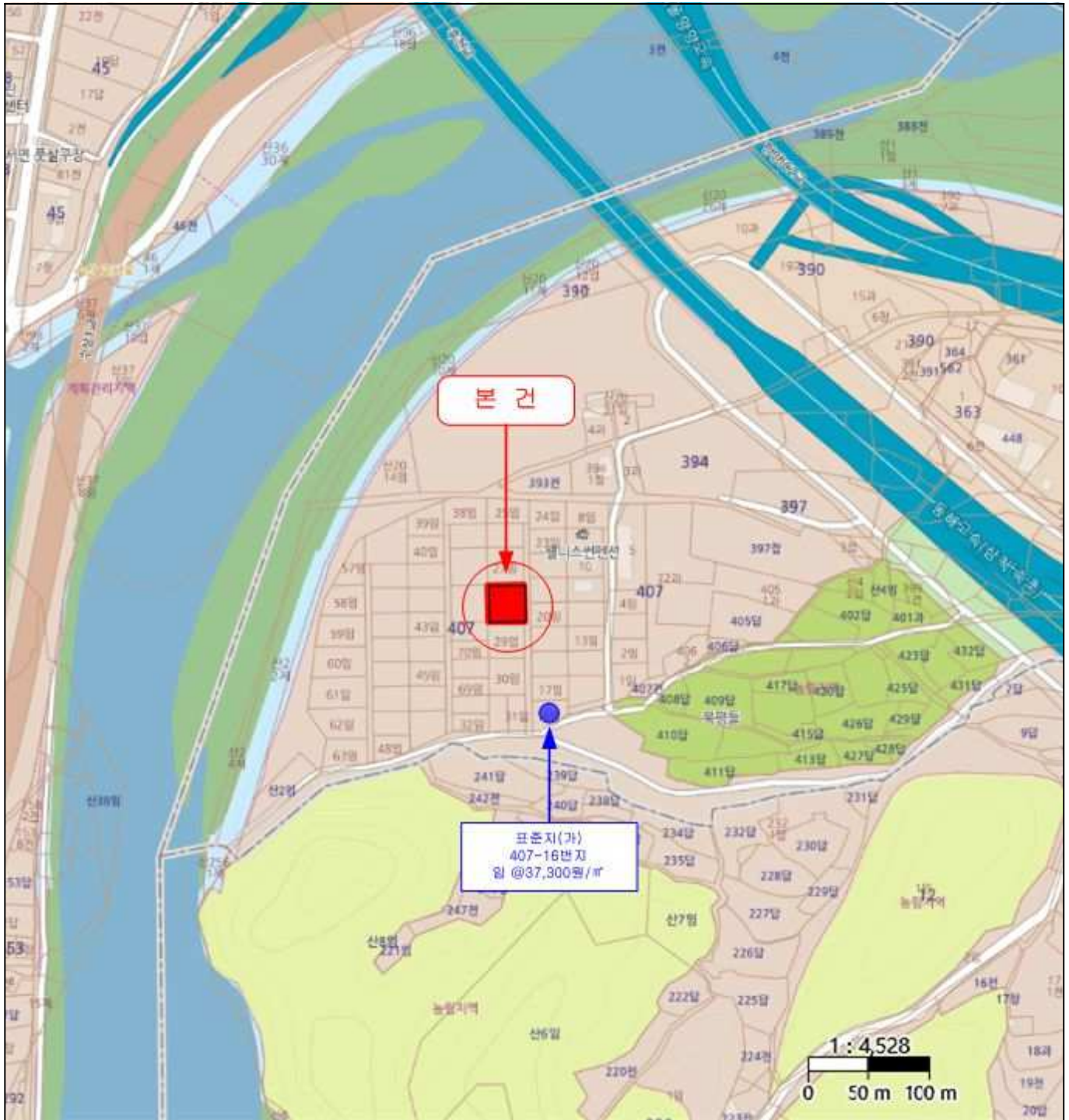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	---------------------------



위치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407-28



지 적 도



